



MSDS에서 외국의 영업비밀제도

성균관의대 산업의학교실 / 김 수근

서론

우리나라는 1996년 7월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 이하 'MSDS'라 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이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화학물질의 사용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화학물질 취급 및 생산 공정에서 유해·위험성 정보가 없으면 사고 시 대응과 예방조치를 취할 수 없다.

따라서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는 가능한 한 폭넓게 공개되어 유통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한다.

MSDS는 근로자들이 노출되는 화학물질의 성분, 함유량, 독성, 발암성, 폭발성, 인

화성 등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¹⁾ 화학물질을 제조·공급하는 사업주는 화학물질 등의 유해성 정보를 입수하기 쉬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보제공을 강제하는 규정을 두었다.

한편,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 정보를 제공할 때에 화학물질의 조성과 함유량에 대한 것은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MSDS에서 영업비밀보호가 필요한 것은 화학물질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기업에게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산안법 제41조 제2항에서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을 구

1)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41조에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수입, 사용, 운반,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등 16가지 항목을 작성하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사²⁾에 의하면 영업비밀을 빌미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정보제공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지적되었다. 즉, MSDS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정보를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화학물질성분 등을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영업비밀이라 기록하는 경우가 있다. 무엇보다도 영업비밀을 이유로 해당 물질의 유해·위험성에 관한 정보까지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영업비밀제도의 보완과 개선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근로자의 알권리와 기업의 영업비밀보호가 균형을 유지하면서 화학물질로 부터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도의 취지와 이행을 위한 절차나 방법 등이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외국의 제도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산안법에서 MSDS 영업비밀보호제도의 개선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외국의 영업비밀보호제도

선진 외국에서는 MSDS제도에 근로자의 알권리와 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위해서 어떤 제도가 있으며, 어떻게 운영하자는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MSDS 영업비밀제도 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MSDS제도 개선에 필요한 정책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선진 외국들은 MSDS에서 근로자의 알권리와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제도를 민주시민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장치로 여기고 있었다. 따라서 제도의 취지를 명확하게 표명하고 있으며, 제도가 실행되기 위한 상세한 절차를 두고 있었다.

GHS와 EU(REACH 및 CLP의 지침)

유엔은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표기 및 전달을 전세계적으로 표준화를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sed System. 이하 GHS)을 수립하여 보급하고 있다. GHS는 화학물질이 작업자나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또는 환경보호

2) 이종한 등.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 적용실태 조사 및 제도 개선 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보건분야 - 연구자료 연구원 2009-94-1304). 2009년 12월

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을 GHS의 MSDS 작성지침에 반영하여 화학물질의 조성과 성분정보를 공개할 때에 영업비밀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라벨 또는 MSDS에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영업비밀로 할 수 있는 정보로는 화학물질과 제품의 명칭과 혼합물 중의 함유량으로 제한하였다. 즉,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을 기록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해·위험성에 관한 정보는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다.³⁾

유럽연합(이하 EU)에서는 REACH를 통해서 신규·기존의 구별 없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주에게 유해·위험성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공개하는 것이 관계인의 경제적 이익을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였다.⁴⁾

(1) 혼합물의 전체 조성에 관한 상세한 내용

(2) 중간체로서의 정확한 용도, 물질 또는 혼합물의 정확한 용도나 기능, 응용에 관한 사항

(3) 물질 또는 혼합물의 정확한 제조 혹은 판매 톤수

(4) 제조사 또는 수입자와 그 유통업자 또는 공급망 내의 사용자와의 관계

이들 사항에 대해서 영업비밀로 하고자 할 때에는 REACH 규정에 따라서 유럽 화학물질청(이하 ECHA)⁵⁾에 영업비밀을 요청하여 승인이 되면 화학물질명을 사용하지 않고, 분류명(generic name, 또는 총칭명)을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해당 화학물질명칭을 직접 기록하지 않고 분류명으로 기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클로로벤젠은 그 분류명인 할로겐화 방향족 탄화수소로 표기할 수 있고, 염화수은의 경우에는 분류명인 무기수은 화합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⁶⁾

REACH는 화학물질 정보를 공개하여 열람을 허용하고 있지만, 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권리도 존중하고 있다.

3) GHS의 1.4.8항

4) REACH에서는 제118조

5) REACH는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그리고 제한에 대한 규정(Regulation)이다. REACH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중앙 조정(central coordination) 및 시행(implementation) 역할을 하는 유럽화학물질청(ECHA)을 설치하였다. ECHA는 핀란드의 헬싱키에 위치하고 있으며, EU 전역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평가, 허가, 제한 절차를 관리하고 있다.

6) EU의 1999/45/EC의 부속서VI의 화학적 Identity의 비밀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음. REACH규칙 부속서II(MSDS의 편집과 작성)에도 화학물질 명칭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분류명을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ECHA는 영업비밀 주장이 정당한 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기업의 이익 보호를 해치는 항목들도 등록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기업의 정확한 제조 톤 수, 혼합제 중의 정확한 성분 목록 등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일반적으로 제3자의 요구가 있어도 공개되지 않으며, 인터넷상에서도 역시 공개하지 않는다.

한편, 영업비밀로 보호가 결정된 경우라도 비상사태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사람의 건강·안전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나 긴급적인 행동이 불가결의 경우에 ECHA는 위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즉, 기업이 신청한 정보가 영업비밀이라고 ECHA가 동의하고 나면, 그러한 정보는 긴급 상황에서만 공개된다.

EU에서는 2008년 6월 25일 화학물질 및 조제품에 관한 ‘EU 분류시스템’⁷⁾을 유엔의 GHS에 부합되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하여 CLP⁸⁾ Regulation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서 유럽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류 기준과 표지 요소들을 채택하게 되었다. CLP에서 화학물질의 공급자는 새로운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서 유해·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관

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때에 화학물질의 정보를 MSDS내 공개하는 것이 영업비밀, 특히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그 물질을 참조하는 대체화학물질명⁹⁾을 사용하기 위한 요청을 ECHA에 제출할 수 있다. 요청시에 해당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ECHA는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추가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 ECHA에 요청 또는 ECHA가 추가로 요구한 정보를 수령 후 6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요청된 명칭의 사용은 허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만일, 대체화학물질명으로는 작업장에서 취해야 할 필요한 예방조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혼합물의 취급에 따른 위해성을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체화학물질명의 사용은 재검토해야 한다.

한편, 예방 및 치료 대책을 공식화하기 위해, 혼합물을 시장 출시하는 수입자 및 사업주로부터의 응급시에 관련된 정보를 수령하는 책임을 가지는 단체를 EU 회원국들은 지명하여야 한다. 이때에 지명된 단체는 수령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증을 하여야 하고, 정보는 다음 경우에만

7) ‘화학물질의 분류, 표지 및 포장에 관한 현행 규정(Directive 67/548/EEC)’과 ‘조제품에 관한 현행 규정(Directive 1999/45/EC)’

8)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9) 대체명에 대해서는 Directive 1999/45/EC, Annex VI, part B.의 명명법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1) 예방 및 치료 대책을 파악하여 의학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응급상황인 경우

(2) 위해성관리대책의 개선이 요구되는 시기를 확인하는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

(3) 임명된 기관은 자신들의 책임 하에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REACH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서 정보보호 신청 및 정보보호 사유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매뉴얼을 제공하였다.¹⁰⁾

이 매뉴얼은 ECHA가 정보보호 여부를 평가하는 절차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등록신청자가 정보보호 요청을 수락하지 않는 결정을 볼 수 있는 신청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정보보호 사유를 작성하는 예제가 포함되어 있다.

일본

일본은 MSDS제도를 산업안전보건법(이

하, 안위법)과 특정화학 물질의 환경에의 배출량 파악 등 관리의 개선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화관법) 그리고 독물 및 연극물 단속법(이하, 독극법)에서 규정하고 있다.¹¹⁾

안위법에서는 통지대상물질을 지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MSDS를 제공하고 사업주는 이를 근로자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고, 영업비밀에 대한 규정은 없고,¹²⁾ 화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화관법은 영업비밀보호¹³⁾가 필요한 사업주가 (1) 해당물질에 지정화학물질 명칭을 기재하고 도도부현 또는 국가의 소관 장관에게 신청하며, 이에 따라 담당 장관(화학제조의 경우 경제산업장관)이 이유를 붙여서 지정화학물질의 분류명칭으로 통지하도록 요청한다. (2) 담당 장관은 신청된 지정화학물질의 명칭 대신에 해당 화학물질분류 명칭¹⁴⁾을 당해 사업장의 도도부현지사에 통지함과 동시에 환경장관과 경제산업장관에게도 화학물질명이 아닌 분류명칭으로 통지한다. (3) 담당 장관은 신청에 대한 판정 결과

10) 매뉴얼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참조할 수 있다. http://echa.europa.eu/doc/reachit/dsm_16_confidentiality_claims.pdf

11) 일본은 각 법률의 목적에 근거해 MSDS 대상 물질을 규정하고 있다.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판단해서 MSDS의 작성 대상여부를 지정하고 있다.

12) 제57조의 2 제2항에 통지대상물질(638종류)의 양도제공자는 그의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7가지 정보를 양도 제공을 받는 상대방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의 양도제공자로부터 양도 제공을 받은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그러한 통지사항을 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근로자에게 주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3) 「특정화학 물질의 환경에의 배출량 파악 등 및 관리 개선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있어서의 비밀정보의 심사 기준에 대해」에 근거한 영업비밀정보 취급이 정해져 있다.

14) EU에서 채택하고 있는 대체화학물질명 또는 분류명과 동일함.

를 신청자에게 30일 이내(필요하면, 30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 가능)에 통지하고,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서 통지한다. (4) 승인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에게 통지 후 2주가 경과한 후에 신속하게 환경장관, 경제산업장관 및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도도부현지사에게 당해 결정에 관한 지정화학물질의 명칭을 알린다. (5) 영업비밀의 청구에 대하여 신청자는 과거의 기록에 대해 계속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분류명칭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의 청구를 매년 해야 한다.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해당 화학물질명을 분류명칭으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1) 지정화학물질의 명칭 등이 공개되면, 영업비밀이 다른 사업주 등에 알려질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2) 사용 취급에 대한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비밀성).

(3) 기타 사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에 대한 정보이어야 한다(유용성).

(4)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한다(비공연성).

이상과 같이 일본에서 MSDS의 영업비

밀보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화학물질에 대해서만 적용 된다.

(2) 사업주가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관청에 이를 신청해야 한다. 즉, 지정화학물질의 배출량 등을 신고할 때에 사업소관장관에게 화학물질취급에 관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고, 그 화학물질 명칭 대신에 화학물질의 분류명으로 환경장관 및 경제산업장관에게 통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영업비밀보호를 신청할 때에는 도도부현지사를 경유하지 않고, 사업소관장관에게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명을 분류명으로 기록하는 방법은 화관법 시행령 별표에 정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의 ECHA에서 제시한 방법과 유사하다. 또, 함유율 등 그 외의 필수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기재를 생략 할 수 없다.

(3) 영업비밀보호 요청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비밀성, 유용성, 비공지성의 3개의 요건에 비추어 지정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의 사업을 소관하는 장관(이후, 사업소관 장관)이 판단한다.¹⁵⁾

(4) 영업비밀보호 신청에 대해서 사업소

15) 영업비밀의 요건은 부정경쟁 방지법에 따라서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는 생산방법 그 외의 사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의 정보이며 공공연하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비밀성(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는 것), 유용성(생산방법 그 외 사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의 정보인 것), 비공지성(공공연하게 알려지지 않은 것)의 3개의 요건에 비추어서 사업소관장관이 엄격하게 판단한다.

관장관은 화학물질의 명칭에 대신하는 화학 물질이 분류명으로 환경장관 및 경제산업장 관에 통지한다. 정부(환경장관, 경제산업장 관, 사업소관장관)는 영업비밀이 인정된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명칭이 아닌 화학물질의 분류명으로 공개해야 한다.

(5) 지속적으로 영업비밀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청구가 없는 연도에는 화학물질 명칭을 공개한다.

(6) 환경장관과 도도부현지사는 영업비밀로 인정된 신고 사항에 대하고 설명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환경보전 관점에서 환경장관이 영업비밀로 여겨진 정보를 입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환경장관은 사업소관장관에게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도도부현지사도 영업비밀로 신고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규정은 기업이 국가에 제출한 정보에 대한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것이다. 기업간 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화학물질의 정보에 대한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상세규정은 없다. 다만, 기업 간에는 영업비밀과 관계되는 부분을 별지로 첨부하거나 상호간에 비밀유지계약을 맺는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¹⁶⁾

미국

1985년에 OSHA는 MSDS를 사업주의 의무로 하는 유해·위험성 공지기준(Hazard Communication Standard, 이하 HCS)을 시행하였다. 제조·수입 또는 유통 업자는 MSDS를 작성하여 제공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제조·수입업자에게서 MSDS를 제공받을 권리와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사업주가 유해·위험성의 존재 및 이를 제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정보전달을 하지 않은 경우에 벌금은 각 해당 위반사항에 따라 5,000-70,000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다. 위의 의무 사항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50,000달러(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500,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규정, 규칙, 고시 등의 유사한 규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 사례마다 70,000달러 벌금 또는 3년 이내의 징역을 구형할 수 있다. 특히 OSHA에서는 초기 위반사항에 대해 사업규모에 따라 2, 5, 10배의 가중처벌을 적용할 수 있다. 기록의 오류 또는 미적용, 등의 위반 시에는 10,000달러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6) 제품 안전데이터시트의 작성지침·개정2판

미국의 MSDS제도에서 영업비밀이 보호되는 것은 화학물질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일반명, 화학물질명 및 상품명 등 화학물질명을 식별 가능한 것)뿐이다.

그 이외의 필요 기재항목 정보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화학물질의 식별 정보에 관한 영업비밀 주장은 기업 간의 정보교환에 대해 기업이 알아서 결정할 수 있다. 즉, 사전에 정부에 요청을 하여 심사를 받지는 않는다. 그리고 화학물질 식별 정보 이외의 영업비밀에 관해서는 기업 간에 비밀유지계약을 맺은 다음에 MSDS에 모두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화학물질 식별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MSDS제도의 영업비밀 보호규정으로 보호되고, 그 외의 필요 기재 항목에 대한 영업비밀은 기업 간의 비밀유지 계약에 의해 보호된다.

화학물질 식별정보(일반명, 화학물질명 및 상품명 등 화학물질명을 식별 가능한 것)를 MSDS상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영업비밀에 합당하다는 취지와 요건을 갖추고 있다.
- (2)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에 관한 정

보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3)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화학 물질의 식별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MSDS 상에 기록해야 한다.

(4) 보건전문가, 근로자 및 지정 대리인에게는 구체적인 화학물질의 식별정보를 공개 할 수 있다. 이때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보건전문가에게만 제공된 정보는 누구에게도 제공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영업비밀로 간주하여 밝힐 필요 없음).

특히, (4)에 대해서는 긴급 시, 비긴급 시의 공개 절차 및 비밀유지계약 등에 대해서 상세한 규정이 있다.

의료상의 긴급시에는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종사자에게 영업비밀정보라도 또, 비밀유지계약의 유무를 불문하고 공개해야 한다. 즉, 담당 의사나 간호사가 의학적 응급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위해를 일으킨 특정 화학물질의 정보가 치료나 응급조치에 필요할 때에는 화학물질 제조자, 수입자 또는 사업주는 요청 서류 유무나 비밀보호 방침 여부에 상관없이 즉시 특정 영업비밀 화학물질의 정보를 의사 및 간호사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때에 화학물질 제조자, 수입자 또는 사업주는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요청 서류와 비밀보호 방침을 요구할 수 있다.

17)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왜 해당 화학물질의 공개가 필수적인지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공개를 요청하는 정보의 비밀보호 를 유지하는 방법을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비밀보호방침에 동의함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응급상황이 아니더라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정보는 다음과 같은 경우로 요청이 있을 때¹⁷⁾에는 의료종사자(의사, 산업보건의), 독성학자, 역학연구자, 산업보건간호사 등 및 해당 근로자 또는 지정 대표자에게 산업보건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1) 근로자들이 노출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평가하는 경우
- (2) 근로자들의 노출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작업환경조사를 하는 경우
- (3) 노출된 근로자들의 건강진단을 하는 경우
- (4) 노출된 근로자들에게 의학적 치료를 하는 경우
- (5) 노출된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보호 장비를 선정하는 경우
- (6) 노출된 근로자들에게 공학적 대책 및 다른 보호 장치를 개발하는 경우
- (7) 노출의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영업비밀 정보를 받은 의료종사자, 근로자 또는 지정 대표자가 그 내용을 OSHA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공개보다 우선하거나 공개와 동시에 그 정보를 제공한 화학물질 제조자, 수입자 또는 사업주에게 공개 사실을 통보를 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제조자, 수입자 또는 사업주가 특정 화학물질의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것을 거부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1) 의료종사자, 근로자 또는 지정 대표자에게 요청 30일 내에 통보되어야 한다.
- (2)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3) 특정 화학물질이 영업비밀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 (4) 공개요청을 거부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5) 특정 화학물질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다른 정보만으로 해당 의료 또는 산업보건상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의료종사자, 근로자 또는 지정대표자는 제기한 정보공개 요청이 거부되었을 때에는 요청내역 및 거부서면을 OSHA에 위탁하여 제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에 OSHA는 요청된 특정 화학물질의 정보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또는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하더라도 요청한 의료종사자, 근로자 또는 지정대표자가 합법적인 의학적, 산업보건상 필요에 의하여 서면상의 비밀유지를 위한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화학물질 제조자, 수입자 또는 사업주를 소환할 수 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심리위원회에서 판결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OSHA는 다음과 같은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한다.

(1) 화학물질 제조자, 수입자 또는 사업주가 특정 화학물질의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주장이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2) 의료종사자, 근로자 또는 지정대표자가 해당 정보를 요청한 의학적, 산업보건상의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3) 의료종사자, 근로자 또는 지정대표자가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법을 명시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이러한 근거들을 가지고 위원회 규칙에 따라, 화학물질 제조자, 수입자 또는 사업주는 소환 진행 동안에 해당 정보의 비공개를 지속할 수 있으며, 행정법 판사는 소환과 임증 서류를 비공개 심사하거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명령을 실행할 수 있다.

화학물질 제조자, 수입자 또는 사업주가 특정 화학물질의 비밀보호 동의가 비공식적 공개로 인한 잠재적 피해로부터 충분한 보

호를 제공하지 않음을 OSHA측에 표명할 경우, OSHA는 정보공개에 대한 명령이나 추가적인 제한사항 및 조건을 실행하여 화학물질 제조자, 수입자 또는 사업주에게 피해를 줄만큼의 위험이 없는 선의 산업보건 활동을 보장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정보공개를 우선시하면서도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의 영업비밀은 보호 받을 수 있고, 근로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공개할 수 있도록, 공익과 기업의 이익이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정부에 의한 심사나 인증제도는 없다. 특권을 주장하는 측이 그 근거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일반 원칙에 근거해서 영업비밀 보호를 주장하는 측이 영업 비밀의 취지를 입증하도록 하였다.

영국

영국은 산업보건안전청(HSE) MSDS제

-
- 18) CHIP : 위험 유해 화학물의 공급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의무를 규정 [화학물질(표시 및 포장) 취급 규칙 Chemicals (Hazard Information and Packaging for Supply)Regulations]
 - 19) 화학물질에 대한 지식의 발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의 지침(EU Directives)은 수시로 업데이트 되고 있으며, CHIP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로 한다.
 - 20) 유해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규정(유해 물질 관리 규칙 Control of Substances Hazardous to Health Regulations)
 - 21) 위험성, 폭발성 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규정(위험물질 및 폭발성 대기 규칙 Dangerous Substances and Explosive Atmospheres Regulations)

도에서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신청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MSDS는 CHIP¹⁸⁾에 따른다. 이것은 1994년에 입법되어 화학물질의 제조자로 하여금 유해 화학물질의 분류, 포장, 라벨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하였다.

2009년에 개정하여 현재는 CHIP4(CHIP2009)가 있다.¹⁹⁾ 그리고 COSHH²⁰⁾, DSEAR²¹⁾는 산업안전보건관리를 위해서 MSDS 활용을 의무로 하고 있다.

영국에서 MSDS에서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 (1) 원칙 공개
- (2)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비공개
- (3) 단 (2)에 해당할지라도 사람의 생명·건강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공개(단서조항)라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화학물질의 식별이나 조제물(mixture)의 성분에 관한 공개는 제조업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y)에서 인정²²⁾하고,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명을 대신하는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영국도 CHIP에서 이를 수용하였다.²³⁾

CHIP에 따르면 영업비밀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물질은 CHIP3의 승인된 공급 목록(The Approved Supply List)²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의 규정은 CHIP4로 개정되면서 EU의 CLP법을 따르는 것으로 바뀌었다.

영업비밀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업주나 공급자는 신청서에 영업비밀보호의 정당성으로 화학물질명의 공개가 지적재산권을 위협한다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HSE는 신청 후 3주 이내에 서면으로 결정 사항을 알린다.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EU의 지침에 따라서 영업비밀보호가 필요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그 식별자를 사용하는 대신에 대체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다.

22) Dangerous Substances Directive(67/548/EC; DSD), Dangerous Preparations Directive(1999/45/EC; DPD) and Safety Data Sheets Directive(2001/58/EC; SDS)

23) 화학물질명의 비밀에 대한 조항이 CHIP3의 Schedule 5, Part 1, paragraph 30에 기술되어 있다.

24) 화학물질들은 EC의 분류와 라벨링을 폭넓게 수용하고 있으며, 사용도가 높은 물질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목록으로 공인된 Annex I은 정기적으로 보완되고 있으며, 영국의 Annex I은 The Approved Supply List 형태이며, 이것은 CHIP 공식 문서로 출간되고 있다. 또한 Annex I의 기술적인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는 DB는 <http://www.the-ncec.com/cselite>에서 제공하고 있다.

결론

우리나라는 물론 조사한 EU, 일본, 미국 및 영국 등에서는 MSDS를 통한 화학물질의 정보공개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의 권리, 경쟁상의 지위 그 외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등은 비공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 건강, 생활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근로자는 헌법상 인정되는 개인적 생존권을 위한 정보의 알 권리를 보장받고 있으므로, 기업의 사업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유해·위험으로부터 생명과 건강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단순히 기업경영상의 이익을 위해 근로자의 알 권리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물론 일반인들 사이에 폭넓게 공유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산안법은 근로자의 알 권리를 골격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기업의 경쟁력과 기

술개발 및 국가 산업발전을 위하여 MSDS를 통해서 공개되는 정보 중에 영업비밀의 보호가 필요하다.

산안법에서는 영업비밀보호의 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공개를 하는 경우를 사후관리를 위한 경우에만 규정하고 있어서 예방활동을 위한 일상적인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필요하다.

이때에는 당연히 정보공유자의 권리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한편, 법에 규정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영업비밀보호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있어서, 이를 물질에 대해서는 사전심사제도로 대신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산안법에서 근로자의 알 권리와 영업비밀보호 확보를 위하여 법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영업비밀을 판단하는 사업주의 의무, 영업비밀 적용대상과 표기 및 영업비밀사항에 대한 공개요청과 관리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외국이 제도에서 대안을 발견할 수 있었다. ☺